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65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이정현 · 박홍배 · 이용우
김우영 · 김 현 · 민병덕
이해민 · 윤준병 · 김태년
한민수 · 정진욱 · 박선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여성인권 문제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교육·연구·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

임(안 제11조의5 및 제16조 신설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제11조의6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재단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보존·관리
3.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홍보 및 전시·기념사업
4.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5. 세계 분쟁·갈등 지역의 여성인권 침해와 평화 저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6.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여성인권과 평화에 관한 사업 또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⑧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관리·운

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공연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5(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국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1조의6(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④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u> <u>⑤ 재단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u>

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보존·관리

3.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홍보 및 전시·기념사업

4.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5. 세계 분쟁·갈등 지역의 여성인권 침해와 평화 저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6.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여성인권과 평화에 관한 사업 또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평

<신 설>

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
당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
관은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
연금

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⑧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
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접
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⑨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공연히

	<u>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u> <u>인·왜곡하거나 일본군위안부</u> <u>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u> <u>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u> <u>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u> <u>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u> <u>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u> <u>다.</u>
--	---